

철마산터널 축조공사 민간투자사업

실 시 협 약

2000. 10. 28.

인 천 광 역 시
철 마 개 발 주식 회 사

- 목 차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1
제 2 조 (정 의)	1

제 2 장 기본약정

제 3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7
제 4 조 (관리운영권의 설정 및 무상사용기간)	8
제 5 조 (본 사업시설의 귀속)	8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및 권한)	8
제 7 조 (법령의 변경등)	9

제 3 장 사업비

제 8 조 (총사업비)	9
제 9 조 (인천광역시의 사업비 부담)	9
제 10 조 (보상업무)	10
제 11 조 (총사업비의 변경)	10

제 4 장 공사에 관한 사항

제 12 조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12
제 13 조 (행정상 지원)	12
제 14 조 (업무감독)	12
제 15 조 (공사기간)	13
제 16 조 (공사의 착수)	13
제 17 조 (공정보고)	14
제 18 조 (사업이행보증금)	14
제 19 조 (지체상금)	14
제 20 조 (공사의 도급)	15
제 21 조 (기성검사)	15
제 22 조 (민원처리 및 손실보상)	16
제 23 조 (문화재 및 위험물의 처리)	16
제 24 조 (안전관리)	16
제 25 조 (기술심의 및 책임감리)	16
제 26 조 (보험가입)	17

제 5 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27 조 (준공확인)	17
제 28 조 (유지관리)	18
제 29 조 (운영비용)	18
제 30 조 (이용차량 자료등의 제출 및 확인)	19

제 6 장 사업수익률 및 통행료

제 31 조 (사업수익률)	19
제 32 조 (통행료의 징수)	19
제 33 조 (최초 통행료의 산정)	19
제 34 조 (통행료의 정기적 조정)	21
제 35 조 (통행료의 부정기적 조정)	21
제 36 조 (통행료 수입보장 및 환수)	22

제 7 장 위험의 배분

제 37 조 (위험배분의 원칙)	22
제 38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23
제 39 조 (인천광역시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24
제 40 조 (협약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 및 그 처리)	25

제 8 장 인천광역시의 지원

제 41 조 (재정지원)	26
제 42 조 (행정적 지원)	27
제 43 조 (기타 인천광역시의 지원사항)	28

제 9 장 협약의 종료

제 44 조 (협약의 종료)	28
제 45 조 (협약의 중도해지)	29
제 46 조 (해지시 지급금)	30
제 47 조 (해지시 지급금의 조정 및 결정)	31
제 48 조 (협약 중도해지시의 효과)	32
제 49 조 (종료 또는 중도해지시에 따른 일반규정)	33

제 10 장 기타사항

제 50 조 (분쟁의 해결)	34
제 51 조 (불가항력 사유)	34
제 52 조 (불가항력 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	34
제 53 조 (공사기간 및 무상사용기간의 연장)	35
제 54 조 (자금의 차입등과 인천광역시장의 협조)	35
제 55 조 (기타 경미한 수익성 사업)	36
제 56 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36
제 57 조 (협약의 변경)	36
제 58 조 (권리의무의 양도)	37
제 59 조 (협약의 우선)	37
제 60 조 (일부무효)	37
제 61 조 (적용법규)	37
제 62 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37
제 63 조 (통지)	37
제 64 조 (제목)	38
제 65 조 (기타)	38
제 66 조 (협약의 효력)	38

서명란	39
출자자 확인서명	40
부록 1 - 철마개발주식회사 출자자 및 지분율	41
부록 2 - 총사업비	42
부록 3 - 인천광역시가 부담하는 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43
부록 4 - 보험가입	44
부록 5 - 추정 교통량	45
부록 6 - 추정 통행료수입	46
부록 7 - 운영비용	47
부록 8 - 최초통행료 산출내역	48



실 시 협 약

인천광역시와 철마개발주식회사는, 철마산터널축조공사 민자유치시설사업(이하, 아래 정의된 바와 같이 "본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1997. 3. 13.자로 동 회사를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부평구 산곡동간 철마산터널, 접속도로, 지하차도의 건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실시협약(이하, "구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철마개발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구 협약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본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1998. 3. 5.자로 고시하였는 바, 양 당사자는 본 사업의 근거법률인 민자유치촉진법(아래 정의됨)을 대체하는 민간투자법(아래 정의됨)이 1998. 12. 31.자로 제정·공포되고, 동법 및 동법 시행령이 1999. 4. 1.자로 시행됨과 아울러 1999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1999. 7. 9.자로 수립·공고됨에 따라, 민간투자법 부칙 제2조 제4항에 의거 본 사업을 민간투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동법과 그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한 변경 실시협약을 2000. 10. 28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협약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철마산터널축조공사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철마산터널 민간투자시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와 사업시행자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 의

- ①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본 조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정의를 따른다.

1. 감리자 : 본 협약 제25조에 따라 선정된 감리전문회사를 의미한다.
2. 건설기간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운영개시일의 전날 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3. 건설기술관리법 : 대한민국법률 제5964호 건설기술관리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 : 대한민국법률 제6112호 건설산업기본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5. 공사기간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에 관한 공사를 착수한 날로부터 민간투자 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 준공확인을 신청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공사착수일 :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고, 실제 본 사업시설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는 날을 의미한다.
7. 교통량 : 본 사업시설을 통행하는 차량의 연차별 총량을 의미한다.
8. 관리운영권 : 본 사업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이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및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관리운영권으로서 본 사업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9. 국가계약법 : 대한민국법률 제545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10. 기타 경미한 수익성 사업 :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인천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11. 대주단 :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차입계약(들)상의 채권자단을 의미한다.

12. 무상사용기간 :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본 사업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13. 민자유치촉진법 : 대한민국법률 제4773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14. 민자유치촉진법시행령 :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5274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시행령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15. 민간투자법 : 대한민국법률 제6021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16. 민간투자법시행령 :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6220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17.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1999. 7. 9.자 기획예산처 고시 제1999-1호 '99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18. 보장기준통행료수입 : 부록6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 사업년도 추정통행료수입의 90%를 의미한다.
19. 보조금 : 본 협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본 사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20. 본 사업 :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특정된 철마산터널의 건설 및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하며, 여기서 건설이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운영이라 함은 관계법령 및 본 협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통행료 징수,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 등의 영위를 각 의미한다.
21. 본 사업기간 :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무상사용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2. 본 사업부지 :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특정된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말한다.
23. 본 사업시설 :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특정된 본 사업의 대상시설로서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부평구 산곡동간 철마산터널, 접속도로, 지하차도를 말한다.
24. 본 협약 : 본 변경 실시협약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5. 본 협약당사자 : 본 협약의 당사자인 인천광역시와 사업시행자를 의미한다.
26. 불가항력사유 : 본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 협약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사태를 의미하며, 제40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다.
27. 사업계획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1996. 9. 3.자로 인천광역시장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계획 내용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8. 사업년도 : 본 사업기간중의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다만, 운영종료년도의 경우는 당해연도 1월1일부터 실제 운영이 종료하는 날까지를 의미한다.
29. 사업수익률 : 인천광역시와 사업시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한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에 대한 기대수익률로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의 수익률 및 사용료산정을 위한 함수관계식에서 적용되는 사업의 실질수익율(IRR)을 의미한다.
30. 사업시행자 : 본 협약의 당사자로서 인천광역시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철마산터널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철마개발주식회사를 의미하며, 그 적법한 승계인을 포함한다.
31. 사업시행자의 지정 : 본 사업에 대하여 인천광역시가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구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행위를 의미

한다.

32. 산업안전보건법 : 대한민국법률 제5886호 산업안전보건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33. 소비자물가변동율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상의 소비자물가변동율을 의미한다. 소비자물가변동율이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공시되지 않는 경우 본 협약당사자간에 합의되는 다른 지수로 대체된다.
34. 시공자 :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3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대한민국법률 제5969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36. 시설사업기본계획 :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6-86호('96. 6 .5.)에 의한 철마산터널 축조공사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37. 실시계획 :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촉진법 및 구협약에 따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은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8-56호(1998. 3. 5.)에 의한 철마산터널축조공사민자유치시설사업실시계획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38. 운영개시일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대한 주무관청인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본 사업에 대한 준공필증을 교부받고,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실제로 도로를 개통하고 통행료의 징수 등 그 운영을 개시하는 날을 의미한다.
39. 유관기관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 및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를 의미한다.
40. 인천광역시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를 말하며, 그 명칭변경 및

행정구역 개편의 경우를 포함한다.

41. 인천북항 : 해양수산부의 신항만개발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개발계획중인 항만을 의미한다.
42. 잉여수익금 : 실제통행료수입과 환수기준통행료수입과의 차액에서 동 차액으로부터 기인하는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한다.
43. 자금차입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차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44. 자금차입계약(들) :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대주단등이 체결하는 계약(들)을 의미한다.
45. 제세공과금 : 본 사업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의미한다.
46. 주공사 : 본 사업의 주된 공사로서 철거공사 등의 사전공사를 제외한 공사를 의미한다.
47. 총민간사업비 : 총사업비에서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48. 총사업비 :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총액이며 민간 투자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다.
49. 총선순위채무 : 본 협약의 해지시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들)에 따라 대주단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총채무(조기상환수수료 포함)를 의미한다.
50. 최초통행료 : 본 협약에 따라 운영개시일에 적용할 통행료를 의미한다.
51. 추정교통량 : 본 협약 제30조 제1항에 제시된 교통량으로서 그 내용은 부록5

와 같다.

52. 추정통행료수입 : 본 사업시설의 추정교통량에 통행료를 곱한 금액을 의미하며, 그 내용은 부록6과 같다.
53. 통행료 :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통행료를 말한다.
54. 통행료수입 : 사업시행자가 징수하는 통행료의 총수입을 말한다.
55. 환수기준통행료수입 : 부록6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 사업년도의 추정통행료수입의 110%를 의미한다.
56. 해지시지급금 : 본 협약 제46조에 따라 본 협약의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57. 회계사 : 대한민국에서 공인회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 중에서 본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 ② 본 협약에서 명시된 모든 계약, 협약 및 서류들은 그의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본 협약에서 명시된 모든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 등은 본 협약 체결일 이후 그의 개정 또는 그를 대체하는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 등을 포함한다.
- ③ 본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리자, 인천광역시, 대주단, 사업시행자, 시공자 기타 본 협약상 어느 당사자 및 제3자 등은 그의 적법한 승계인을 포함한다.

제 2 장 기 본 약 정

제 3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인천광역시장은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및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1. 실시계획 수립 및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실시설계와 건설
2. 제1호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본 사업부지의 무상사용
3. 제1호에 따라 설치된 본 사업시설의 무상사용, 수익
4. 관리운영권에 의한 본 사업시설의 유지, 보수, 관리, 운영과 통행료의 부과, 징수
5. 제55조에 규정된 기타 경미한 수익성 사업

제 4 조 관리운영권의 설정 및 무상사용기간

- ① 인천광역시장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 후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다만, 지하차도시설은 제외한다.
- ②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는 무상사용기간은 본 협약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되지 아니하는 한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으로 하며, 동 기간동안 관리운영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단, 시운전 및 본 사업시설의 홍보 등의 사유로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 기간은 무상사용기간에서 제외한다.
- ③ 본 사업시설의 조기준공시 제27조에 따른 조기준공확인을 거쳐 확정된 운영개시 일로부터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공사완공예정일까지의 기간은 무상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은 위 공사완공예정일 다음날로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제 5 조 본 사업시설의 귀속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민간투자법 및 본 협약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에 귀속된다.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및 권한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법규 및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의 시행과 관리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한다.
- ②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을 본 협약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하기로 한다.
- ③ 본 협약 및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천광역시장은 사업기간동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 7 조 법령의 변경 등

본 협약 체결일 이후 본 사업과 관련되는 법률, 명령, 규칙, 조례, 행정계획, 인천광역시장 또는 유관기관의 행정지침 등의 제정, 개정, 폐지, 수정, 변경 등이 있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 3 장 사업비

제 8 조 총사업비

본 협약 체결시 총사업비(금 77,830백만원, 1999년 7월 31일 불변가격 기준) 중 총 민간사업비는 금 42,830백만원(1999년 7월 3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그 내용은 부록 2와 같다.

제 9 조 인천광역시의 사업비 부담

- ① 인천광역시는 본 사업시설 중 접속도로 및 지하차도의 공사비와 터널공사비의 일부로서 금 35,000백만원(1999년 7월 31일 불변가격 기준)을 부담하며, 그 내용은 부록3과 같다.
- ② 인천광역시가 부담하는 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부록3에 따르되, 사업시행

자는 예정공정율의 범위내에서 기성공정율에 따라 사업비 지급을 신청하며, 인천광역시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는 14일이내의 범위에서 동 지급을 연장 할 수 있다.

- ③ 인천광역시장은 본 조항에서 정해진 사업비가 적기에 지급되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중 매년도 7월말일까지 인천광역시장에게 다음년도에 인천광역시가 부담하는 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인천광역시장이 제2항의 지급기한까지 인천광역시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인천광역시가 부담하는 사업비에 관하여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당사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제 10 조 보상업무

- ① 본 사업부지의 매수업무와 이와 관련한 토지보상, 손실보상, 분묘이전, 체신·한전주이전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은 인천광역시 예산으로 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하며, 이와 관련된 계반서류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인천광역시장은 사업시행자의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상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공사착수에 지장이 없다고 본 협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 ③ 보상지연 등 보상업무와 관련한 민원등으로 공사의 착수 또는 주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는 본 협약에 의한 공사지연으로 보지 아니하며, 인천광역시의 보상업무나 지장물처리지연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동 비용에 대하여는 본 협약 제8장에서 정한 위험 배분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제 11 조 총사업비의 변경

- ① 총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이외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건설기간중 현저한 물가변동에 의한 총사업비의 변경. 단,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변경기준일은 1999. 7. 31.로 한다.
 2. 제2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변경
 3. 본 협약의 다른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4. 본 협약에 규정된 사유나 방식 이외에 총사업비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민간투자법 등 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설계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장의 본 사업에 대한 계획변경(사토장변경 기타 민원으로 인한 계획변경 포함)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가 또는 신규비목이 발생하는 경우
 2. 공사관련 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포함)의 제, 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 ③ 국내민간투자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 개정으로 인한 제세공과금의 증가나 기타 인천광역시의 규책사유로 인한 건설기간연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변경을 한다.
- ④ 총사업비의 변경은 실시설계의 설계내역서를 기준으로 하고, 단가작성기준일은 1999. 7. 31.로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총사업비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증빙자료 및 산출근거를 첨부한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회계사의 확인을 거쳐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총사업비 중 공사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 ⑥ 사업시행자가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민간투자법을 따른다.

- ⑦ 총사업비의 증가가 인천광역시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본 협약 제39조에 따라, 협약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본 협약 제40조에 정한 방식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다만, 본조 제2항에 따라 총사업비가 감소되는 경우에는 다음번 사업비 지급시 이를 감안하여 지급하거나 최초통행료 조정시 반영하기로 한다.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총사업비의 증가는 총사업비변경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 4 장 공사에 관한 사항

제 12 조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인천광역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인천광역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13 조 행정상 지원

시설사업기본계획 6.6-2항에 의한 다음 각호의 행정절차 이외에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된 행정절차는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해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인·허가등의 사항은 민간투자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와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장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구비서류: 사업시행자 준비)

제 14 조 업무감독

인천광역시장은 민간투자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본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한다.

제 15 조 공사기간

- ①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2개월로 한다. 다만, 철거공사등의 사전시공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의 귀책사유,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와 사전협의한다.

제 16 조 공사의 착수

- ① 공사착수일은 향후 사업시행자가 제출할 변경실시계획에 따라 협약체결일 이후 인천광역시가 승인 통보한 날로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공사착수일 15일 이전에 시공자가 작성하여 감리자가 확인한 착공계를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철거공사 등의 사전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자가 작성한 착공계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매년 1월말까지 시공자가 작성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거친 본 사업의 전체 공정과 당해연도 시공분이 표시된 설계도서를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확정 전에 인천광역시의 승인을 받아 시공자로 하여금 이 공사를 착공하게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시공자는 사전에 공사시공계획서, 구조물 표준횡단면도,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 ⑤ 총사업비 산정을 위한 공사착수의 기준일은 잠정적으로 2000. 7. 1로 하되 사업

시행자는 인천광역시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하여 실시계획 변경승인후 공사착수일까지 공사의 개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인천광역시장과의 협의에 의하여 공사착수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 17 조 공정보고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공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공정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중 매분기별로 인천광역시장에게 공사추진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사일정에 따라 본 사업 시설의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8 조 사업이행보증금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총사업비중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부대비(보험료, 대출관리수수료 제외) 및 운영설비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현금 또는 유가증권, 은행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본 사업수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제1항의 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2조를 준용하여 인천광역시에 귀속된다.

제 19 조 지체상금

- ①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본 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변경승인된 실시계획에 정한 공사완공예정일 다음날로부터 실제완공일까지 1일당 지체상금으로 총사업비중 인천광역시가 승인한 기집행부분을 공제한 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천광역시장이 발행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누적지체상금은 총사업비중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부대비(보험료, 대출관리수수료 제외) 및 운영설비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5조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지체상금은 연장된 공사기간 이후부터 산정한다.
- ③ 누적지체상금이 총사업비중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부대비(보험료, 대출관리수수료 제외) 및 운영설비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인천광역시는 본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이행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다.

제 20 조 공사의 도급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자들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를 지정 또는 변경시 그 계약방법 및 계약조건 등을 인천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시공자가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의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철거공사와 같은 사전공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사업시행자는 감리자가 제2항의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시공자 또는 그 하수급인의 시공과정에서 노임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또는 그 하수급인에게 지불될 기성금액 중 체불노임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지하차도시설에 대한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을 시공자로부터 청구하여 인천광역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 21 조 기성검사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 공사에 대해 시공자로 하여금 감리자에 의한 기성검사를 분기별 1회이상 받도록 하고 기성검사 완료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인천광역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제 22 조 민원처리 및 손실보상

본 사업시설에 대한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사항은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단, 제10조의 보상업무에 관련된 민원은 인천광역시장이 처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처리하여야 할 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중재 및 해결방안 강구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협조를 하기로 한다.

제 23 조 문화재 및 위험물의 처리

본 협약당사자들이 본 협약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한 문화재 또는 본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 협약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폭발물, 유독화학물질 기타 이에 준하는 위험물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본 협약 제8장에 정한 위험배분원칙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제 24 조 안전관리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공을 위한 안전조직을 갖추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시공자로 하여금 수습하도록 하고, 인천광역시장은 필요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 25 조 기술심의 및 책임감리

- ① 사업시행자는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술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리자의 설계감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업시행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실시설계시 설계감리를, 공사시 공사전면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감리비를 감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결과를 인천광역시장에게 통보한다.

- ④ 인천광역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추천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감리전문회사들 중에서 본 사업의 책임감리를 시행할 감리자를 선정하며,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감리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그 하수급인이 감리계약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인천광역시장은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업무수행을 감독한다. 감리자는 인천광역시장과 사업시행자에게 감리업무현황의 정기보고, 기성검사, 준공검사, 설계변경, 품질 및 안전계획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⑦ 감리자 선정 등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 26 조 보험가입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본 협약체결 당시 가입예정된 보험의 내용은 부록4와 같다.
- ②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금을 당해 보험사고의 치유를 위해 우선사용하여야 하며, 동 사실을 인천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27 조 준공확인

- ① 사업시행자는 준공예정일 45일전까지 시공자가 작성하여 감리자가 확인한 확정 설계도서를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완공 3개월 전에 감리자로부터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완공후 즉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자가 확인한 준공조서를 첨부한 본 사업시설에 대한 공사준공보고서를 인천광역시장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장은 준공확인신청을 접수한

후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준공확인필증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제15조에서 정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본 사업시설을 완공하는 경우에도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기)준공확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장은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조기)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인천광역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필증(조기준공확인필증을 포함)을 교부받은 후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운영개시일 이전에 미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운영개시일, 최초통행료(조기준공시 적용할 통행료 포함) 기타 필요사항들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건설지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 28 조 유지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과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시설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도록 본 사업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일 3개월 전까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유지보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말까지 다음 연도의 유지보수계획을 인천광역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당해연도 유지보수결과에 대하여 다음년도 1/4분기 중에 인천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인천광역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게 하거나 긴급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9 조 운영비용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하여 부록7의 운영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본 협약 제8장에 정한 바에 따라 재정지원이나 통행료조정 또는 무상사용기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인천광역시가 부담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추가 감가상각으로 인한 법인세절감액이 발생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에 이를 환급하기로 한다.

제 30 조 이용차량 자료 등의 제출 및 확인

- ① 본 협약 체결시 적용하는 추정교통량은 부록5와 같다.
- ②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동안 매년도의 1/4분기 중에 인천광역시장에게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전년도의 교통량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교통량현황 및 본 사업 수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협약당사자간의 합의로 선정한 회계사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제 6 장 사업수익률 및 통행료

제 31 조 사업수익률

사업수익률은 사업시행자와 인천광역시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후 세후 실질사업수익률로서 8.56%로 한다.

제 32 조 통행료의 정수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무상사용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통행하는 차량들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한다.

제 33 조 최초통행료의 산정

① 최초통행료는 제32조의 사업수익률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장 제2.1절의 수익률 및 사용료결정을 위한 함수관계식에 근거하여 산출하고, 본 협약 체결단계에서 본 협약당사자가 합의한 금545원(소형, 1999년 7월 31일 불변가격 기준,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며, 그 내역은 부록8과 같다. 다만, 동 통행료는 운영개시일전까지의 소비자물가변동율을 누적 적용하여 조정하며, 사업시행자가 운영개시일 6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에 신고함으로써 확정된다.

1. 통행방법 및 통행료율
2. 통행료의 산출기초자료
3. 통행료의 징수방법
4. 통행료의 감면 또는 할증율 및 그 대상
5. 유사시설의 통행료 수준
6. 기타 통행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통행료(최초통행료 포함)는, 통행료 징수방식의 변경에 의하여 100원 단위 이하로 징수할 수 있게 되지 않는 한 부록6의 추정통행료수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100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③ 인천광역시장의 요청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통행료와 그 요금수준이 상이한 통행료를 최초통행료로 적용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이 통행료수입을 보전하기로 한다.

1. 인천광역시장이 요청한 통행료의 적용후 매6개월 경과시점에서 산정된 사업시행자의 실제통행료수입이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최초통행료 적용시 예상되는 추정통행료수입의 6개월분에 미달되는 경우, 인천광역시는 그 미달분을 보조

금으로 교부하기로 한다.

2. 위 실제통행료수입이 당해연도 추정통행료수입의 6개월분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인천광역시는 동 초과분을 환수하기로 한다. 이 경우 환수분의 처리는 본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우선사용한다.

제 34 조 통행료의 정기적 조정

- ① 통행료는 무상사용기간중 원칙적으로 연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매 사업년도에 대한 연도별 통행료를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을 범위내에서 대체도로의 상황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사업년도에 본조에 따라 통행료를 조정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최근 통행료조정이 있었던 사업년도 이후 기간 동안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또는 통행료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합산하여 산정한 통행료를 신고할 수 있다.
- ③ 전항에 따른 통행료 조정신고후 3월 15일까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 당해연도에 적용할 통행료는 신고된 통행료로 확정되며, 새로운 통행료는 15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매년 4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의 요청으로 인하여 제2항에 따라 신고된 통행료와 그 요금수준이 상이한 통행료를 적용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하는 통행료수입의 증감분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항을 준용하기로 한다.

제 35 조 통행료의 부정기적 조정

- ① 다음 각호의 사유발생시 본 협약에 정한 원칙과 방식에 따라 통행료를 조정한다.
 1. 인천광역시의 귀책사유,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손실 또는 비용등이 발생한 경우
 2. 절전년도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에 미달이 된 경우

3. 기타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경우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의한 통행료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와 사업시행자는 협의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협의기간동안 통행료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항의 협의요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본 협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기관에 통행료를 산정하도록 요청하며, 본 협약당사자는 그들이 보유하는 통행료산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3의 전문기관에 따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본 협약당사자는 제3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통행료의 산정을 의뢰받은 후 가능한한 10일 이내에 협약당사자 쌍방에 문서로 통보토록하며, 본 협약당사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 36 조 통행료 수입보장 및 환수

- ① 추정통행료수입은 추정교통량에 통행료를 곱한 금액을 의미하며, 협약체결시의 추정통행료수입은 부록6과 같다.
- ② 인천광역시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업기간동안 보장기준통행료수입을 보장하기로 한다. 매사업년도말 사업시행자의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분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우선하되, 통행료나 무상사용기간 조정을 결합할 수 있다.
- ③ 환수기준통행료수입을 초과하는 통행료수입은 인천광역시가 환수하기로 한다.

제 7 장 위험의 배분

제 37 조 위험배분의 원칙

-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의 배분 및 처리는 당해 위험에 대한 귀책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위험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관련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와 사업시행자간 별도협의를 통하여 각각의 분담비율을 정하기로 한다. 이 경우 위험분담비율은 인천광역시와 사업시행자간에 있어, 각 사유의 성격에 따라 8:2 또는 2:8의 범위내에서 정하기로 한다. 이 경우 제36조 제2항의 보장기준통행료수입의 보장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에 의거 각 사유의 성격에 따른 위험분담비율을 정함에 있어 당해사유의 발생이 어느 협약당사자의 행위 또는 권한 및 지배범위에 근접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제 38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 ①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
1.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정한 사업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업시행자의 고의나 과실에 기한 본 사업시설의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3. 사업시행자의 고의나 과실에 기한 행위결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과산선고가 있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주주총회에서 해산 및 청산을 결의한 경우
 5.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에 필요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여 자금차입계약(들)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시행자가 법령 또는 본 협약에 정한 사항들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민간 투자법 제4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장의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누적지체상금이 사업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손실등 추가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 39 조 인천광역시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①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인천광역시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

1. 인천광역시의 요구(사토장 변경 등 본 사업에 대한 계획변경, 민원에 의한 정부나 유관기관의 요구 포함)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가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하는 경우
2.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가되는 경우
3. 민간투자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호를 포함한 본 사업시설 또는 본 사업시행권에 대한 물수
4. 인천광역시의 보상업무나 지장물 등의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의 착수 또는 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5. 인천광역시의 요구나 방침등(통행료의 감면요구 포함)으로 인하여 본 협약에 따라 조정, 결정된 통행료 보다 낮은 수준의 통행료를 징수하게 되는 경우
6. 국내 민간투자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이 있는 경우
7. 본 사업과 관련된 인, 허가 처리절차의 지연등 본 협약에 정한 인천광역시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손실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보상으로서의 재정지원을 우선하기로 한다.

제 40 조 협약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 및 그 처리

①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사유 기타 협약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등의 자연재해 및 위험물이나 문화재의 발견
2. 전국적 또는 사회산업 전반의 파업
3. 정부정책·경제환경 및 본사업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차입계약(들)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 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4. 본조 제2항에 정한 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유

②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사유 기타 협약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령 이외의 모든 민간사업자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의 일반적인 개정

③ 본조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동 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제37조 제2항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당해 위험을 분담처리 한다.

1. 공사기간중인 경우 우선적으로 당해 사유의 치유기간 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하며, 이로 인한 손실 등 추가비용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와 사업시행자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재정지원과 사업시행자의

추가자금조달을 결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추가자금조달한 부분은 최초통행료나 무상사용기간 조정을 통하여 이를 보전하기로 한다.

2. 운영기간중인 경우 운영중단기간은 이를 무상사용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이로 인한 손실 등 추가비용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와 사업시행자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재정지원과 사업시행자의 추가자금조달을 결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추가자금조달한 부분은 통행료나 무상사용기간 조정을 통하여 이를 보전한다.
 3. 공사기간 또는 운영기간을 불문하고, 제2항 제2호에 정한 일반적인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 수익성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그로 인한 현저한 증가분은 인천광역시로 환수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제52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협의를 하며, 협의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사유의 처리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한다.

제 8 장 인천광역시의 지원

제 41 조 재정지원

- ① 민간투자법, 동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 정한 재정지원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조에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재정 지원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 정한 재정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재정지원을 요청하면, 인천광역시는 재정지원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금액을 지원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 차기년도 3월말까지 지급한다. 다만, 공사기간중 인천광역시의 요구 등 인천광역시의 행위로 인한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재정지원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유 및 자금계획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인천광역시는 재정지원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시행여부 및 방침을 결정

하며, 동 방침에 따라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재정지원을 실행하기로 한다.

- ③ 제2항 또는 본 협약에 정한 재정지원에 있어 재정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체되는 경우 인천광역시는 제2항의 기간(요청일로부터 90일)경과일 다음날로부터 당해일에 한국증권전산에서 고시하는 신용등급 A'인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 유통수익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단서에 따른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인천광역시 방침에 따라 재정지원하기로 결정된 시기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동 지급시기 경과일 다음날로부터 제9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 ⑤ 인천광역시는 본 협약에 따른 재정지원(인천광역시가 부담하는 사업비 포함)을 함에 있어, 당해 재정지원금액에 대한 법인세 기타 이에 부가되는 주민세등이 발생하는 경우 동 세금액을 제외한 재정지원금액이 당해 재정지원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실질적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동 세금액에 대하여는 실제 납세일 전일까지 지원하거나 또는 장기대부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 42 조 행정적 지원

- ① 인천광역시장은 본 사업시설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평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등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인천광역시장은 운영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본 사업시설과 인천북항간 연결도로의 개설 및 본 사업시설이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단, 본 사업시설과 인천북항간 연결도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는 본 협약체결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 ③ ~~인천광역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시설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수방법의 자동화 등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인천광역시장은 본 사업시설을 무단으로 통과하는 차량 등에 대한 가산금의 부

과동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43 조 기타 인천광역시의 지원사항

- ① 인천광역시는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가 본 사업의 공사수행에 필요한 조사 및 인·허가등 유관기관에 의한 제반절차가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② 인천광역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예정지역내의 공유재산을 본 사업시설이 준공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③ 본 협약체결 이후 민간투자사업 촉진을 위한 관계법령의 변경이나 정부, 인천광역시 기타 유관기관의 제도개선이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장은 동 개선사항 및 변경내용에 따라 추가협약을 체결하여 반영하기로 한다.

제 9 장 협약의 종료

제 44 조 협약의 종료

- ① 본 협약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해지되지 않는 한,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무상사용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고 그 경우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은 소멸하여 인천광역시장은 관련법규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말소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 만료일 3년 및 6개월전에 각1회씩 인천광역시장 또는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무상사용기간 만료일에 본 사업시설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시설의 점검결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기간 만료전까지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 ③ 인천광역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전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장의 판단에 따라 무상사용기간의 만료이후에 사업시행자

가 본 사업시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45 조 협약의 중도해지

- ① 인천광역시에 의한 중도해지-제38조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천광역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중도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의 취소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에 의한 중도해지-다음 각호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에 서면으로써 본 협약의 중도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1. 본 협약에 정한 사유의 발생시 사업시행자로부터 통행료나 무상사용기간의 조정,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서면통지를 받고도 인천광역시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가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발송한 경우, 인천광역시가 그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그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2. 건설기간, 무상사용기간 중에 사업시설과 유사한 목적을 갖는 도로, 터널 또는 교량등이 개설되어, 본 사업시설을 사용하는 교통량의 현격한 변동이 있어 통행료 또는 무상사용기간만의 조정으로 본 사업의 계속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제39조(인천광역시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4호 또는 제7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이 6개월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 ③ 기타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다음 각호의 경우 본 협약당사자는 상대방당사자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
1. 제40조(협약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한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협의개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2. 문화재와 관련한 고고학적 작업이나 위험물발견으로 인한 예방책 또는 중화책

이 시행되고 당해사유가 발생한 구간 이외의 구간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동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여, 당해구간 공사의 진행 또는 본 사업의 운영이 1년이상 지체되거나 어느 협약당사자가 자기 의무의 중대한 부분을 1년 이상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④ 본조에 따라 본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을 중도해지 하기 위해서는 본 협약당사자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⑤ 본 협약당사자는 본조에서 정한 협약의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중도해지사유의 발생사실과 90일이내의 기간내에 당해사유의 치유를 요구하거나 치유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통지(해지사유발생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동 기간내에 당해 사유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치유에 의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본 협약당사자는 상대방당사자에게 서면통지(해지통지)를 함으로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과는 해지통지의 도달로써 발생한다.

제 46 조 해지시 지급금

- ①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인천광역시는 본 사업시설물의 적정가치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 ② 인천광역시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인천광역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또는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1. 공사기간중인 경우 본 사업시설물의 적정가치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2. 운영기간중인 경우 부록8에 표시되어 있는 미래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NPV)
- ③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인천광역시는 공사기간 또는 운영기간을 불문하고 본 사업시설물의 적정가치 또는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④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인천광역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또는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1. 공사기간중인 경우 본 사업시설물의 적정가치

2. 운영기간중인 경우 부록8에 표시되어 있는 미래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NPV)

⑤ 본조에 따른 적정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적정가치의 산정에 있어 공사기간중인 경우에는 투입가치, 운영기간중인 경우에는 수익가치로 한다.
2. 미래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 산정에 있어 할인율은 사업수익율에서 1%를 차감 한 율로 한다.

제 47 조 해지시 지급금의 조정 및 결정

① 본 협약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지급할 해지시지급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된다.

1. 본 협약의 중도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 등에 관하여 어떠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동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사업시설의 복구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는 경우 동 보유금액 상당을 공제한다.
2. 본 협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대주단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무를 인천광역시가 관계법령에 따라 면책적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한 경우 인천광역시 또는 제3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단,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주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적정가치의 산정에 있어 인천광역시가 부담하는 사업비로서 기투입된 부분은

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 ② 본 협약의 중도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시지급금에 대하여 본 협약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 협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회계사를 지정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도록 한다. 본 협약당사자는 그들이 보유하는 위 금액 산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회계사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본 협약당사자는 회계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해당 금액의 산정을 의뢰받은 후 가능한 한 30일 이내에 이를 산정하여 본 협약당사자 쌍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는 금액이 정하여지면 예산을 확보하여 해당 금원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적정가치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협약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 ③ 본 협약당사자간에 회계사 지정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각각의 회계사를 지정하여 산정된 금액을 협의하여 인정한다.
- ④ 본 협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지시지급금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중도해지일로부터 해지시지급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3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 예금이자율로 계산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어야 한다. 다만, 해지시지급금중 대 ~~3,700~~ ^{3,700} 주단에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자금차입계약(들)에 따라 상환시 적용되는 금리를 적용한다.
- ⑤ 본 협약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지급해야 할 해지시 지급금은 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 또는 조건 없이, 세금 또는 세금을 이유로 하거나 상계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공제나 원천징수 없이 지급된다.
- ⑥ 인천광역시는 법상 또는 달리 가질 수 있는 상계권에 추가하여 본 협약상 사업시행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거나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인천광역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한 후 상계할 수 있다. 단, 해지시지급금이 총선순위채무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다.

제 48 조 협약 중도해지시의 효과

- ①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이 중도해지되는 때에는, 해지시점에 본 사업시설

(공사기간중의 경우 기성부분)은 즉시 인천광역시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의 권리, 권한 등이 소멸하며, 무상사용기간도 종료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인천광역시장 또는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본 사업시설을 인천광역시에게 이전한다. 본 사업시설의 점검결과에 대하여는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본 협약이 제4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에 본조에 따른 금원의 지급시점까지 사업시행자가 대주단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무는 인천광역시장이 관계법령에 따라 동일조건으로 인수하거나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이를 인수하게 하기로 하며, 제3자에 의한 인수의 조건에 대하여는 본 협약당사자 및 제3자간의 협의에 따라 정하기로 한다. 다만,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주단 또는 대리은행은 인천광역시장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사업시행자를 대체할 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장은 추천된 자가 본 협약상 예정된 본 사업의 설계, 공사, 운영 기타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자격과 자금조달 또는 기술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추천을 거절할 수 있다.

제 49 조 종료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의 종료 또는 중도해지시, 본 사업의 원만한 이전을 위해 인천광역시 및 본 사업을 인수할 사업시행자와 협력한다.
- ② 본 협약의 종료 또는 중도해지시는 종료 또는 중도해지일 현재 본 협약에 따라 기 발생한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일방당사자에 의한 본 협약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또한 상대 당사자가 위반 당사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기타 모든 권리에 영향을 미침없이 상대 당사자는 계속하여 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협약에 따라 권리를 집행할 수 있으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및 손해배상, 기타보상, 구제수단 또는 시정조치를 청구할 권리를 포함하여 어느 일방이 본 협약에 다른 권리 행사하지 않는 것이 계속적인 또는 추후의 위반에 대한 당해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10 장 기타사항

제 50 조 분쟁의 해결

- ① 본 협약의 당사자는 본 협약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쌍방간의 우호적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② 제1항과 같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본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른 상사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자는 대한상사중재원 소재지로 한다.
- ③ 본 협약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에 회부하지 못 하는 경우 본 협약상 분쟁의 합의관할은 성질상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을 제외하고는 인천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51 조 불가항력사유

본 협약에 있어 불가항력사유라 함은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유를 말한다.

제 52 조 불가항력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

- ①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기에 다른 협약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서면 통지(불가항력 청구의 통지)를 한다.
- ② 불가항력청구의 통지를 수령한 협약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청구의 합법성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불가항력 청구의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협약당사자에게 동 청구에 대한 이의의 근거를 명시한 서면 분쟁통지(불가항력 분쟁의 통지)를 한다.
- ③ 불가항력 분쟁의 통지가 동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철회되지 않을 경우, 동

분쟁은 제50조에 따라 해결한다.

- ④ 10일 이내에 불가항력 청구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거나 또는 불가항력분쟁의 통지가 철회되는 경우, 인천광역시 및 사업시행자 모두 청구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 ⑤ 청구의 합법성이 인정되거나 인정된 것으로 간주된 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에, 본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사유 및 그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그리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본 사업의 진행 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불가항력사유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다한다.

제 53 조 공사기간 및 무상사용기간의 연장

본 사업기간동안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사기간 및 무상사용기간을 관련 불가항력 사유의 치유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연장한다. 불가항력사유의 결과를 최소화하고 그로 인한 본 협상의 의무 준수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협약당사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노력을 하도록 한다.

제 54 조 자금의 차입 등과 인천광역시장의 협조

- ① 인천광역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총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사회간접자본채권발행 포함)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의 동의 또는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장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② 인천광역시장은 대주단이 대출실행 및 그 관리를 위하여 본 사업 관리운영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이를 설정해주기로 하고 등록된 근저당권자외 권리를 보호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대주단과의 대출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사유 발생 등으로 대주단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 55 조 기타 경미한 수익성 사업

사업시행자는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 단서 및 본 협약 제3조 제5호가 정한 바에 따라 인천광역시장과 협의하여 무상사용기간 중 본 사업시설을 이용하여 광고사업 등 경미한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금은 다음연도 통행료 결정에 반영하며 인천광역시장은 행정지원조치 등 적극 협조한다.

제 56 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본 협약내용중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상이한 사항은 본 협약내용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 57 조 협약의 변경

- ① 본 협약은 본 협약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본 협약상 본 협약 체결이후에 확정 또는 정산하도록 되어있는 항목들에 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동 항목들에 관한 수치가 결정되는 경우 별도의 변경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합의된 수치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③ 본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후 제반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본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본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변경여부와 변경할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민간 투자법의 취지와 본 협약에 규정된 본 협약당사자간의 위험배분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8 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협약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하거나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제 59 조 협약의 우선

본 협약과 그에 언급된 부록 기타 서류들은 본 협약에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구 협약을 포함하여 그 전에 본 협약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구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본 협약 체결시까지 이루어진 본 협약당사자간의 약정, 이행사항은 본 협약내용에 반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제 60 조 일부무효

본 협약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에 명시된 한 개 또는 수 개의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로 되더라도 본 협약에 명시된 나머지 조항의 효력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61 조 적용법규

- ① 본 협약 및 그에 따라 체결되거나 작성되는 모든 계약서 및 서류는 대한민국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 ② 본 협약에 따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간투자법 등 관계법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제 62 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인천광역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협약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 63 조 통지

본 협약상의 통지 또는 최고는 다음의 연락처(단, 변경되는 경우에는 본 협약당사자가 서면통지하는 연락처)로 인편 또는 우편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팩스 또는 전화로 발송하여야 한다. 모든 통지는 수령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사업시행자에게 : 철마개발주식회사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70 광은빌딩

참조 : 관리부장

전화 : 02) 339-0080~1

팩스 : 02) 399-0082

인천광역시에게 : 인천광역시장

주소 : 인천광역시

참조 : 도로과장

전화 : 032) 440-3791~3

팩스 : 032) 440-3779

제 64 조 제목

본 협약상의 모든 조항들의 표제 또는 제목은 참고 및 편의를 위한 것이며 본 협약의 의미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65 조 기타

- ① 사업시행자는 지방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본 사업 공사의 일부에 인천광역시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② 인천광역시장은 본 사업기간 중에 본 사업시설과 관련된 시설을 건설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 66 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본 협약체결일 현재 구협약에 따라 발생한 본 협약당사자의 권리,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00. 10. 28.

인천광역시

시장최기선



천마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연구



본 사업시행자의 출자회사는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 같은 날 아래와 같이
기명·날인한다.

광주 서구 광천동 49-1

금호 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서형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37

엔지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민수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대림 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용구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3

코오롱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민경조



부록 1

철마개발주식회사 출자회사 및 지분율

출 자 회 사	지 분 율	주요업태 및 업종
금호산업(주)	29.5%	건설, 토건 외
엘지건설(주)	23.5%	건설, 토건 외
대림산업(주)	23.5%	건설, 토건 외
코오롱건설(주)	23.5%	건설, 토건 외
합 계	100.0 %	

부록 2

총 사업비
(제 8 조 관련)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비 고
	총민간사업비	인천시부담 사업비	소 계	
1. 조 사 비	90	-	90	
2. 설 계 비	1,531	-	1,531	
3. 공 사 비	33,728	35,000	68,728	VAT 제외
4. 보 상 비	-	-	-	
5. 부 대 비	4,648	-	4,648	
6. 운영설비비	616	-	616	
7. 제세공과금	-	-	-	
8. 영업준비금	2,217	-	2,217	
계	42,830	35,000	77,830	

※ 총사업비는 '99년 불변가격 기준 (가격기준일 : '99. 7. 31)

※ 물가변동비는 연 5% 적용

※ 소수점이하 금액은 반올림



부록 3

인천광역시가 부담하는 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관련)

(단위 : 백만원)

구 분	불변가격	경상가격	비 고
2000년	1/4분기	-	-
	2/4분기	193	200
	3/4분기	191	200
	4/4분기	188	200
	소계	572	600
2001년	1/4분기	5,914	6,355
	2/4분기	4,285	4,661
	3/4분기	5,035	5,544
	4/4분기	2,808	3,130
	소계	18,042	19,690
2002년	1/4분기	3,252	3,669
	2/4분기	3,569	4,076
	3/4분기	2,913	3,368
	4/4분기	834	976
	소계	10,568	12,089
2003년	1/4분기	2,050	2,429
	2/4분기	738	885
	3/4분기	2,270	2,755
	4/4분기	760	934
	소계	5,818	7,003
합 계		35,000	39,382

※ 총사업비는 '99년 불변가격 기준 (가격기준일 : '99. 7. 31)

※ 경상가격은 연평균 물가상승율 5% 반영

※ 소수점이하 금액은 반올림

※ 실제 지급할 시점에는 해당시점의 소비자물가변동율을 누적 적용한 금액을 지급함.

부록 4

보험가입
(제 26 조 관련)

1. 건설기간중

구 分	내 용	비 고
가입 보험	1) 건설공사보험 2) 제3자배상책임보험(C.G.L.)	
보험 목적물	1) 건설공사보험 - 공사목적물 - 공사지연에 따른 이익상실(AL.O.P) 2) 제3자배상책임보험 -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C.G.L.)	
보 상 내 용	1) 건설공사보험 - 인위적 사고 : 화재, 폭발, 도난, 작업 잘못, 전기적 사고 등 - 자연현상 또는 외래적 사고 : 폭풍우, 태풍, 홍수, 지진 등 - 기술적 원인으로 인한 사고 : 지면침하, 사태, 붕괴 등 - 공사지연에 따른 이익상실(AL.O.P) 2) 제3자배상책임보험(C.G.L) - 건설공사보험의 제3자배상책임 초과손해액	전위험 담보
담 보 지 역	첨마산터널 건설현장 및 주변(접속도로 및 지하차도 포함)	
보 험 기 간	공사착수시점 ~ 공사완공시점	
보 험 금 액	① 공사목적물 : 예정공사금액 ② AL.O.P : 운영초기 1년간 예정이익상실분 ③ C.G.L : 10억원 초과 50억원 연간총보상한도액	

2. 운영기간중

구 分	내 용	비 고
가입 보험	1) 완성토목공사물보험(C.E.C.R) 2) 기업유지보험(L.O.P) 3) 영업배상책임보험(C.G.L)	
보험 목적물	1) 완성토목공사물보험 ① 완성토목공사물(터널) ② 복구기간중의 이익상실(L.O.P) 2) 영업배상책임보험 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C.G.L)	
보 상 내 용	1) 완성토목공사물보험 - 인위적 사고 : 화재, 폭발, 도난, 작업 잘못, 전기적 사고 등 - 자연현상 또는 외래적 사고 : 폭풍우, 태풍, 홍수, 지진 등 - 기술적 원인으로 인한 사고 : 지면침하, 사태, 붕괴 등 - 복구기간중의 이익상실(L.O.P) 2) 영업배상책임보험(C.G.L) - 보험의 제3자배상책임 초과손해액	전위험 담보
담 보 지 역	첨마산터널 및 주변(접속도로 포함)	
보 험 기 간	운영기간	
보 험 금 액	① 완성토목공사물 : 터널 공사금액 ② L.O.P : 복구기간중의 이익상실 ③ C.G.L : 10억원 연간총보상한도액	
부 보 비 율	100%	

부록 5

추정교통량
(제30조 제1항 관련)

(단위 : 대/일, 왕복교통량)

년도	1일 교통량			연간 교통량		
	소형	대형	계	소형	대형	계
2004	26,939	1,803	28,742	9,832,735	658,095	10,490,830
2005	28,251	1,889	30,140	10,311,615	689,485	11,001,100
2006	29,350	1,963	31,313	10,712,750	716,495	11,429,245
2007	30,488	2,038	32,526	11,128,120	743,870	11,871,990
2008	31,661	2,119	33,780	11,556,265	773,435	12,329,700
2009	32,879	2,199	35,078	12,000,835	802,635	12,803,470
2010	34,138	2,284	36,422	12,460,370	833,660	13,294,030
2011	35,000	2,341	37,341	12,775,000	854,465	13,629,465
2012	35,878	2,401	38,279	13,095,470	876,365	13,971,835
2013	36,777	2,461	39,238	13,423,605	898,265	14,321,870
2014	37,689	2,523	40,212	13,756,485	920,895	14,677,380
2015	38,619	2,584	41,203	14,095,935	943,160	15,039,095
2016	39,453	2,639	42,092	14,400,345	963,235	15,363,580
2017	40,298	2,696	42,994	14,708,770	984,040	15,692,810
2018	41,158	2,754	43,912	15,022,670	1,005,210	16,027,880
2019	42,028	2,812	44,840	15,340,220	1,026,380	16,366,600
2020	42,912	2,872	45,784	15,662,880	1,048,280	16,711,160
2021	43,329	2,899	46,228	15,815,085	1,058,135	16,873,220
2022	43,749	2,927	46,676	15,968,385	1,068,355	17,036,740
2023	44,174	2,956	47,130	16,123,510	1,078,940	17,202,450
2024	44,602	2,984	47,586	16,279,730	1,089,160	17,368,890
2025	45,036	3,012	48,048	16,438,140	1,099,380	17,537,520
2026	45,473	3,041	48,514	16,597,645	1,109,965	17,707,610
2027	45,913	3,072	48,985	16,758,245	1,121,280	17,879,525
2028	46,358	3,101	49,459	16,920,670	1,131,865	18,052,535
2029	46,807	3,131	49,938	17,084,555	1,142,815	18,227,370
2030	47,261	3,162	50,423	17,250,265	1,154,130	18,404,395
2031	47,720	3,192	50,912	17,417,800	1,165,080	18,582,880
2032	48,183	3,223	51,406	17,586,795	1,176,395	18,763,190
2033	48,650	3,254	51,904	17,757,250	1,187,710	18,944,960

* 2004년 및 2033년 연간교통량은 운영개시일(2004. 1. 1 예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연간교통량 = 1일교통량 × 365

부록 6

추정통행료수입
 (제36조 제1항 관련)

(단위 :백만원)

년도	불변가격	경상가격	년도	불변가격	경상가격
2004	6,452	8,175	2019	10,066	26,515
2005	6,766	9,001	2020	10,278	28,427
2006	7,030	9,819	2021	10,378	30,137
2007	7,302	10,710	2022	10,478	31,951
2008	7,583	11,679	2023	10,580	33,875
2009	7,875	12,734	2024	10,683	35,913
2010	8,176	13,883	2025	10,786	38,074
2011	8,383	14,945	2026	10,891	40,365
2012	8,593	16,086	2027	10,997	42,796
2013	8,809	17,314	2028	11,103	45,370
2014	9,027	18,631	2029	11,212	48,100
2015	9,250	20,044	2030	11,320	50,996
2016	9,449	21,501	2031	11,429	54,064
2017	9,652	23,060	2032	11,540	57,319
2018	9,858	24,730	2033	11,653	60,767
			계	287,599	856,981

※ 추정통행료수입은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

※ 통행료는 소형 600원, 대형 840원(VAT 포함, '99년 불변가격 기준) 적용

※ 2004년, 2033년 추정통행료수입은 운영개시일(2004. 1. 1 예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불변가격은 '99년 불변가격 기준 (가격기준일 '99. 7. 31)

※ 경상가격은 연평균 물가상승율 5% 반영

※ 소숫점이하 금액은 반올림



부록 7

운영비용
(제29조 관련)

(단위 : 백만원)

년도	운영비용			년도	운영비용		
	운영비용	법인세등	계		운영비용	법인세등	계
2004	2,234	-	2,234	2019	2,099	1,948	4,047
2005	2,038	-	2,038	2020	2,078	2,020	4,098
2006	2,032	-	2,032	2021	2,040	2,057	4,097
2007	2,038	-	2,038	2022	2,034	2,097	4,131
2008	3,084	-	3,084	2023	3,139	1,985	5,124
2009	2,098	-	2,098	2024	2,147	2,163	4,310
2010	2,032	437	2,469	2025	2,035	2,203	4,239
2011	2,037	893	2,930	2026	2,042	2,239	4,281
2012	2,076	1,082	3,158	2027	2,035	2,279	4,316
2013	3,135	1,115	4,250	2028	3,186	2,166	5,353
2014	2,097	1,429	3,525	2029	2,104	2,344	4,448
2015	2,030	1,597	3,626	2030	2,038	2,384	4,422
2016	2,081	1,738	3,819	2031	2,044	2,420	4,465
2017	2,030	1,820	3,850	2032	2,084	2,456	4,540
2018	3,136	1,739	4,875	2033	2,528	2,344	4,872
				계	67,811	44,956	112,767

※ '99년 불변가격 기준 (가격기준일 '99. 7. 31)

※ 경상가격은 연평균 물가상승율 5% 적용

※ 법인세 등은 30.8% 적용(인천시보조금에 대한 법인세는 계상하지 않음)

※ 소수점이하 금액은 반올림

부록 8

최초통행료 산출내역
 (제33조 제1항 관련)

(단위 : 백만원, '99년 불변가격 기준)

년도	현금유출				현금유입		
	① 총민간 사업비	② 운영 비용	현금유출계 (①+②)	현재가치	③ 통행료 수입	현금유입계 (③)	현재가치
1997	1,630	-	1,630	1,921	-	-	-
1998	523	-	523	568	-	-	-
1999	278	-	278	278	-	-	-
2000	5,737	-	5,737	5,285	-	-	-
2001	14,466	-	14,466	12,275	-	-	-
2002	10,451	-	10,451	8,169	-	-	-
2003	9,745	-	9,745	7,017	-	-	-
2004	-	2,234	2,234	1,482	5,866	5,866	3,891
2005	-	2,038	2,038	1,245	6,151	6,151	3,758
2006	-	2,032	2,032	1,144	6,390	6,390	3,597
2007	-	2,038	2,038	1,057	6,638	6,638	3,441
2008	-	3,084	3,084	1,473	6,894	6,894	3,292
2009	-	2,098	2,098	923	7,159	7,159	3,149
2010	-	2,469	2,469	1,000	7,433	7,433	3,012
2011	-	2,930	2,930	1,094	7,621	7,621	2,845
2012	-	3,158	3,158	1,086	7,812	7,812	2,686
2013	-	4,250	4,250	1,346	8,008	8,008	2,537
2014	-	3,525	3,525	1,029	8,207	8,207	2,395
2015	-	3,626	3,626	975	8,409	8,409	2,260
2016	-	3,819	3,819	946	8,590	8,590	2,127
2017	-	3,850	3,850	878	8,774	8,774	2,001
2018	-	4,875	4,875	1,024	8,962	8,962	1,883
2019	-	4,047	4,047	783	9,151	9,151	1,771
2020	-	4,098	4,098	731	9,344	9,344	1,666
2021	-	4,097	4,097	673	9,434	9,434	1,549
2022	-	4,131	4,131	625	9,526	9,526	1,441
2023	-	5,124	5,124	714	9,619	9,619	1,340
2024	-	4,310	4,310	553	9,712	9,712	1,247
2025	-	4,239	4,239	501	9,806	9,806	1,160
2026	-	4,281	4,281	466	9,901	9,901	1,078
2027	-	4,316	4,316	433	9,997	9,997	1,003
2028	-	5,353	5,353	495	10,094	10,094	933
2029	-	4,448	4,448	379	10,192	10,192	868
2030	-	4,422	4,422	347	10,291	10,291	807
2031	-	4,465	4,465	323	10,390	10,390	751
2032	-	4,540	4,540	302	10,491	10,491	698
2033	-	4,872	4,872	299	10,592	10,592	649
합 계	42,830	112,767	155,599	59,837	261,454	261,454	59,837
최초통행료	545원('99년 불변가격 기준, 통행료에 대한 부가세 제외) 600원(통행료에 대한 부가세 포함)						

※ '99년 불변가격 기준 (가격기준일 '99. 7. 31)

※ 실질 할인율은 사업수익률 8.56% 적용

※ 소수점이하 금액은 반올림